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하 도 급 거 래 공 정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존 대상 서류 확대(안 제6조제1항제5의4호 및 제8호, 제2항)

- 1) 개정 법률이 원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도록 함.
- 2)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에 관련된 서류 등도 보존하도록 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을 예방하고자 함.
- 3) 비밀유지계약서의 보존기간을 7년으로 함.

나.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4)

- 1) 개정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2) 이에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항목을 열거하고 기술자료요구서 기재사항 중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반환·폐기일’ 등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이유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진행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진행 예정(2021. 11. 19. ~ 12. 30.)

3) 규제심사 진행 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입찰명세서”를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 입찰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5호의3)”을 “(제1항제5호의3 및 제1항제5호의4)”로 한다.

5의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4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 서면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요구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제7조의5 및 제7조의6으로 하고,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6.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8.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 제9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한다. 1. ~ 5의3. (생략) <u><신설></u> 6. · 7. (생략) 8. <u>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다만,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u>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서류는 7년</u>)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6조(서류의 보존) ① ----- ----- ----- ----- -----. 1. ~ 5의3. (현행과 같음) <u>5의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4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 서면</u> 6. · 7. (현행과 같음) 8. <u>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 입찰명세서</u> ----- -----. -----. ② ----- ----- -----(<u>제1항제5호의3 및 제1항제5호의4</u>)----- -----.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생략)

<신설>

기재사항) -----

-- “요구목적-----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7. (현행과 같음)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u>제7조의4</u> · <u>제7조의5</u> (생략)	<u>명단</u> <u>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u> <u>5.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u> <u>6.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u> <u>7.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u> <u>방법</u> <u>8.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u> <u>제7조의5</u> · <u>제7조의6</u> (현행 제7조의4 및 제7조의5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584